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보안법안

검 토 보 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보안 관련 법률 제정〉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3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체계	5
2. 총괄적 검토	6
3. 총칙(제1장)	9
4.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의무(제2장)	16
5. 침해사고의 대응(제3장)	47
6. 이용자 보호(제4장)	64
7. 보칙(제5장)	7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망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동통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동통신망은 최근 수년간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해킹·바이러스·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막대한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보안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이용자의 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책임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 검사·보안계획 수립 등 보안의무를 부과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동통신에 관한 보안을 강화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이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 및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며, 국가는 매년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동통신보안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이동통신사업자는 위험식별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보안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주요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며,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주요이동통신보안지침을 준수하고 이동통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인증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아.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
-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치의 적절성 및 침해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안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 차. 이용자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5조).
- 카.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타. 소비자단체 등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42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9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이동통신보안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6개 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의무

제5조(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
제6조(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신청 등)
제7조(이동통신보안 확보 등)
제8조(위험 식별)
제9조(위험 감소 및 대비)
제10조(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제11조(다중보안체계의 구축·운영)
제12조(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제13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제14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확보 의무)
제15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
제16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식별 의무)
제17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감소 및 대비 의무)
제18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제19조(보호조치명령)
제20조(의견청취)

제3장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침해사고 통지·신고의무)
제22조(재난경보체계를 이용한 통지)
제23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24조(침해사고의 정보 제공 의무 등)
제25조(피해사실의 통지 등)

제26조(정보협력체계 구축)

제4장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의무

제27조(보안조사의 시행 등)
제28조(보안조사단의 구성)
제29조(보안조사의 대상)
제30조(보안조사기간)
제31조(보안조사의 종료)
제32조(보안조사권 남용금지 및 비밀유지의무)
제33조(이용자의 권리)
제34조(이용자 보호의무)
제35조(손해배상)
제36조(침해사고 보상지침)
제37조(정보의 제공)
제38조(비밀유지명령)
제3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0조(집단분쟁조정)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2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43조(전속관할)
제4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5조(소송허가신청)
제46조(소송허가요건 등)
제47조(확정판결의 효력)
제48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장 보칙

제49조(과징금)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2. 총괄적 검토

- 최근 SKT와 KT의 해킹사고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보안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 법률로는 이동통신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동통신망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별도의 이동통신 보안 전담 법률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적 통신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보안체계를 제도화하고,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및 보안책임자 제도 도입(안 제13조~제14조)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도록 함.
- 또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통지 및 신고 의무(안 제21조, 제23조)를 통해 이용자가 피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장비에 대한 국가 인증(안 제5조~제6조)은 장비 신뢰성과 공급망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총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장비 인증 요구, 보안책임자

지정 제도 및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지정 등은 이동통신사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과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공익적 필요성 간의 비례의 원칙에 따른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보 보안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으로 전가되거나,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이동통신사의 경우 이번 제정안과 기존 개별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간 정합성과 적용 범위의 명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조사, 지정 등의 각종 규제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 규정 등과 중복되는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급력이 큰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통사의 보안의무, 침해사고 대응 및 피해구제 체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체계에서 다른 법률과 유

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명확한 국가배후 해킹에 대한 증거 없이 과기정통부가 민간 이통사 침해신고를 받은 즉시 국정원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침해사고 조사단 구성 시 국정원에 인력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의 민간부분 개입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반발 초래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한편, 국정원은 「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라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가정보원이므로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보안’을 ‘정보보호’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총칙(제1장)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주요이동통신사업자” 및 “침해사고”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3. “주요이동통신사업자”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란 영세한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이동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 등에 사용되는 통신망을 말한다.

7.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8.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이동통신망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동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방법

9. “침해사고”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태를 말한다.

가. 가입자 개인정보, 통화 목록, 통화 내용 등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정보의 유출

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저해 또는 불능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수준 저해 또는 불능

10. “보안조사”란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장비·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해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장관이 지정한 자를,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서 장관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이동통신망은 통신설비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침해행위는 해킹,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공격, 인증 절차 우회 등의 방법으로 이동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침해사고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저해나 불능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동 제정안의 주요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
- 동 제정안의 해당 부분은 이동통신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안전·국민보호 차원의 법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정하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과 차별화됨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 침해행위, 침해사고, 보안조사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존 법률과 동일한 용어를 다른 정의로 규정한 경우

○ 동 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침해사고나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기존의 법률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¹⁾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제정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후단에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 침해사고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²⁾에서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과 같이 침해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 동 제정안에서는 가입자 개인정보, 통화 목록, 통화 내용 등의 정보 유출,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저해 또는 불능 등 침해사고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념의 초점에 차이가 있음.

□ 침해사고로 인한 이동통신서비스 수준 저해 등의 명확화 필요

- 제정안에서는 침해사고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 수준 저해’를 포함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저해가 침해사고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핵심적인 범위와 기준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나 기술적 요소 등은 하위 법령에서 위임·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2조 제1호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의 정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할당받는 모든 기간통신역무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범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 제정안 요지

- 이 법은 이동통신보안 및 침해사고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2) 제정안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동통신보안 및 침해사고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는 이동통신보안 분야에 특화된 기본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간 관계 정립 및 법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제정안에서는 ‘이동통신보안’을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 등 이동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사고 예방

등'으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침해사고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용요금 감면·환급, 정부 또는 공공자금에 의한 지원 보상, 기술적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그 보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4.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의무(제2장)

가.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안 제5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장비(이하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함(안 제5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을 위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안 제5조 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5조(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장비(이하 “주요이동통신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을 위하여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 신청 등) ①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주요이동통신장비(이하 “인증장비”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인증장비를 개발·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인증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홍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의 신청 절차·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주요이동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장비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장비, 액세스망(기지국, 중계기 등), 코어망 장비 등이 있으며 현재 일부 장비는 「전파법」에 따라 유해성 여부에 대한 인증³⁾은

3)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받고 있으나 보안성에 관한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고로, 해외에서는 IT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ISO 15408 국제 기준인 국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CC) 인증이 운영 중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성 평가 기준 중 공통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면 획득할 수 있음.

- 지난 8월에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의 경우 피의자들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초소형 기지국 장비, 일명 ‘팸토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장비의 보안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안 제5조는 이동통신장비의 보안성을 포함한 품질 전반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인증 장비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등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질 높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제공을 추구하려는 것임.

1. ~ 7. (생략)

-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 특히, 정부가 직접 인증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새로운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인증 표시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인증 비용의 국가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장비 인증을 통해 보호받는 법익,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인증제도 사례 등을 비교하고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확인하여 민간 장비의 인증 비용 전부에 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에는 이동통신장비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의 규정이 없어 수범자인 이동통신장비 관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므로 별도로 정의를 하거나 이동통신장비의 종류를 예시로 나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없고,

개정규정의 문언상 이동통신이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그러므로,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기관은 이동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보안성 제고 효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동향 등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제정안에는 이동통신장비에 대한 정의나 예시가 없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상업적 제품에 대한 특정사안 요구, 적합성 평가 요구는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이동통신보안 확보 등(안 제7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이동통신보안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이동통신보안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이동통신보안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고유식별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기술 적용 및 암호화기준 작성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 이용자의 신원 확인 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인증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한 동적 인증 적용 등 기술적 보안조치
 - 이동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생 가능한 침해행위의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보안조치
 -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2) 제정안 조문

제7조(이동통신보안 확보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이동통신보안 확보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이동통신보안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이동통신보안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고유식별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및 암호화기준 작성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2. 이용자의 신원 확인 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인증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한 동적 인증 적용 등 기술적 보안조치
3. 이동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4.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생 가능한 침해행위의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보안조치
5.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조치
6.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 강화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3) 검토사항

- 안 제7조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조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보안지침을 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 관련 대응능력을 사전에 갖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5조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실시 의무가 부과되고 정부가 보호조치의 기준이 되는 정보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업자도 포함되므로 현행 규정

4)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검사·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 취지,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안 제7조가 시행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이중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안 제7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취 지	-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u>안정성</u> 및 <u>이동통신보안 확보</u>와 <u>침해사고 예방</u>	- 정보통신망의 <u>안정성</u> 및 <u>정보의 신뢰성</u> 확보
대 상	- 이동통신사업자(「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u>전기통신사업자</u>)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전기통신사업자</u>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지 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보안지침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보호지침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가 의무 사항이고 이를 위반하면 안 제49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나, 보안조치 의무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익성이 높은 규정임에도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위험 식별(안 제8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위험식별검사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 등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위험을 분석·평가(이하 “위험식별검사”)하여야 함(안 제8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제2항).
 - 새로운 형태의 침해행위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 이동통신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위험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제2호)

(2) 제정안 조문

제8조(위험 식별)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위험식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 등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위험을 분석·평가(이하 “위험식별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침해행위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통신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위험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기준(이하 “위험식별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식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험식별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8조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험식별검사기관을 통해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험식별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명령에 따라 수시로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 최근 발생한 통신 3사 침해사고와 같이 이미 정기적인 위험식별검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다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검사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5)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식별검사기관과 동일한 기관이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안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데,

-
- 5)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동일 시설에 대하여 위험식별검사와 현행법상 취약점 분석·평가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어 입법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8조	현행 정보통신산업 보호법 제8조
정기 검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	- 매년 1회 실시(최초 지정 시 지정 후 6월 이내)
수시 검사 사유	- <u>새로운 형태의 침해행위</u>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동통신망에 <u>중대한 변화</u>가 발생하여 <u>별도의 위험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u>	- <u>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u>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u>중대한 변화</u>가 발생하여 <u>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u>
수행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정보공유·분석센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라.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1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와 시스템을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이하 “다층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1항).
-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다층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단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11조(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와 시스템을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이하 “다층보안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다층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다층보안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다층보안체계(Multi Level Security;MLS)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정보와 시스템의 등급을 나누어 이에 적용되는 보안체계를 차등화

하여 구축하는 것임

- 최근 원격근무 확대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증가 등 망분리에 기반한 보안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다층보안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안 제11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다층보안체계 구축·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로 부과하여 이동통신사업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다층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되는데 법률상 문언만으로 사업자가 다층보안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다층보안체계에 대하여 정의하거나 다층보안체계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예시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안 제12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 보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제1항).
-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험식별검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함(제3항)
-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함(제4항).
- 국가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교육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12조(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 보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험식별검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⑤ 국가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기술 수준 함양을 위하여 교육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는 사업 규모가 작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위험식별검사와 이동통신보안계획을 위탁한 경우 제정안에 따른 보안조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2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이동통신 보안 위험도’만을 예시로 두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 지정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매출액, 서비스 가입자 수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사업규모와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만을 고시할 뿐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사업자가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
-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되면 보안조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며 제정안에 따른 보안조치 의무 이행 효과가 나타나는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12조 제4항은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식별검사 및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 위탁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는 제정안에 따른 보안 관련 의무 이행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지원규모나 기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다루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소규모이동통신사업자가 법적 의무 이행 비용을 계속하여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가 스스로 의무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갖출 유인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보안역량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비용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이동통신 사업자의 단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보안역량 강화에 대한 유인을 침범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규모 사업자 지정 기준을 정부가 매년 고시 하도록 하여 수범자가 규제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안 제13조 제1항)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경제상황의 변화,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동통신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목록을 고시하고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3항).
-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제4항).
 -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자료의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음(단서)

(2) 제정안 조문

제13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경제상황의 변화,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동통신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

업자의 목록을 고시하고 지정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으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목록의 고시 절차, 시기 및 통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매년 새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강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3조 제1항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경제상황의 변화,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동통신보안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그 해의 경제상황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지정 기준에 반영하면 지정 기준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를 예

측하기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매출액, 서비스 이용 고객 수, 상장 여부 등 변동성이 적고 수범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이미 사회적 파급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⁶⁾하고 있어 안 제13조에 따른 주요이동통신사업자 지정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요 사업자 지정 기준을 정부가 매년 고시하도록 하여 수범자가 규제의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6)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안 제15조)

(1) 제정안 요지

-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인증장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함(안 제15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 여부나 사용 중인 인증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및 특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2) 제정안 조문

제15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의무) ①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인증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 여부나 사용 중인 인증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보안 위협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의 교체·점검 및 특정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5조 제1항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 제5조에 따라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주요이동통신장비를 우선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장비의 사용 여부와 성능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 또한,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주요이동통신장비 교체·점검·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함.
- 이는 주요이동통신장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인증 장비를 통한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인증장비 사용 관련 의무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 다만,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주요이동통신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인증장비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 주요이동통신장비의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인증 표시 및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한 안 제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은 시장의 영역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임.
- 따라서,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인증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이를 권고하거나 인증장비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장비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이미 인증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용 중인 장비를 강제로 교체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즉, 사용 중인 장비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필요가 있으나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 검사(안 제17조 및 제18조)

(1) 제정안 요지

-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보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할 수 있음(제3항).
-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수정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수정된 이동통신보안계획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포함한 서면(이하 “수정권고 불수용통지”)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단서)
- 주요이동통신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과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17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위험 감소 및 대비 의무) ①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보안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정권고할 수 있다.

④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정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수정된 이동통신보안계획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근거를 포함한 서면(이하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라 한다)을 권고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요이동통신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수정권고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과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의 결과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를 위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 검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자료의 열람으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7조는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 제9조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계획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8조는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보안계획 이행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하고 이를 위해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함.
-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사항인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을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의무로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정부가 점검하여 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으로 대체만을 허용할 뿐 반드시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부가 민간기업의 민감한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 보호조치명령(안 제19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보안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보호조치명령”)할 수 있음(안 제19조)
- 제17조제2항에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동통신보안계획 또는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

(2) 제정안 조문

제19조(보호조치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보안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보호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동통신보안계획 또는 수정권고 불수용통지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보안계획의 이행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검토사항

- 안 제19조는 주요이동통신사업자가 수립하여 제출한 이동통신보안계획의 내용이나 그 이행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보안 관련 정책을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19조는 “이동통신보안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령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핵심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함.

5. 침해사고의 대응(제3장)

가. 침해사고 통지·신고의무(안 제21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 발생을 인지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1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행정안전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제2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제3항)
-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함(제4항)

(2) 제정안 조문

제21조(침해사고 통지·신고의무)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행위 발생을 인지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3. 국가정보원
4. 경찰청
5. 행정안전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1조는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즉시 신고하고, 이동통신망을 공유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침해사고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적 은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⁷⁾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 법안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정보통신망법에는 침해사고 ‘신고’ 외에 ‘통지’ 및 ‘게시’의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안에서와 같이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통지·게시 의무를 신설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침해사고 신고 제도와 별도로 독립된 조항에서 통지·게시 의무를 규정할 경우 법체계상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

7)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도와 연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침해사고 통지 의무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점⁸⁾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제정법을 통한 별도 규제보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가 입법정책적으로 더 타당할 수 있음.

8) 의안번호 제2211392호(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02호(이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595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나.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안 제23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3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이하 “침해사고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분석 및 이동통신보안계획 반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3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중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중 일부 구역을 특정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단체 소속 인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4항).

(2) 제정안 조문

제23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이동통신보안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인 및 피해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이하 “침해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분석 및 이동통신보안계획 반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가정보원

3. 경찰청

4. 그 밖에 이동통신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중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중 일부 구역을 특정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단체 소속 인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 활동 기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3조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단체 소속 조사단원의 참여를 일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단의 구성 방식, 권한, 활동기간 등 주요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법적 권한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업무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력지원 요청 기관까지 법률에 직접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조사단 운영이 병행될 경우 동일한 침해사고에 대해 이중 조사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사고 조사단은 기존 정보통신망법 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제48조의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다. 피해사실의 통지 등(안 제25조)

(1) 제정안 요지

-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피해 규모, 내용 및 피해를 입은 이용자(이하 “피해이용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해이용자에게 그 규모와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25조 제1항).
- 침해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피해이용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14일마다 그러한 사실을 전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단서)
-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이용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전체 이용자에게 도달하여야 함(제2항).
-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해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분석 결과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3항)
- 보고서의 제공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보고서의 열람으로 제공을 대체할 수 있음(단서).

(2) 제정안 조문

제25조(피해사실의 통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피해 규모, 내용 및 피해를 입은 이용자(이하 “피해이용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해이용자에게 그 규모와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피해 이용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14일마다 그러한 사실을 전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이용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전체 이용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해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의 제공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보고서의 열람으로 제공을 대체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25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이용자 또는 전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침해사고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 사례에서 사업자의 신고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공지가 추가로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이용자 통지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제도¹⁰⁾

10)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를 두고 있고, 이용자 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¹¹⁾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체계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동일한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또한, 안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더라도 피해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인에게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자유와 기업 비밀 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의 범위, 방식, 예외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11) 의안번호 제2210586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37호(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497호(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라. 보안조사(안 제27조부터 제32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통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이행하는 등 침해사고 사실의 은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과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피해이용자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안조사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한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보안조사단의 인원, 구성, 활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조사 사유의 중대성, 보안조사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8조)
- 보안조사를 시행하는 조사단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제32조)

(2) 제정안 조문

제27조(보안조사의 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안조치·이용자보호조치의 적절성 및 적법성과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통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이행하는 등 침해사고 사실의 은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침해사고의 발생 원인, 피해 규모 및 범위, 대책 마련 및 피해이용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발생한 침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견되거나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주요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보안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보안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안 조치 또는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피해이용자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안조사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 서버 기록 등 관계 자료의

보전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28조에 따른 보안조사단 구성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보안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보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안조사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단장 중 1인은 이동통신보안과 이동통신서비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보안조사단의 인원, 구성, 활동 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조사 사유의 중대성, 보안조사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보안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안조사단의 활동 기간도 동일한 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조사단의 구성을 위하여 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보안조사의 대상) ① 보안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대상 장비, 조사기간 및 조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요구서등”이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과 동시에 조사요구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안조사 대상은 조사요구서등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③ 보안조사 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전통지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보안조사기간) ① 보안조사는 조사 대상·사유·범위·난이도·피해정도·통신보안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안조사단 활동 기간 내에서 조사단장이 정하되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 반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최소 5일의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장비 등의 정밀 검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4.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5. 조사 대상자가 의무 이행 등을 입증 또는 해명하기 위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③ 조사단장은 천재지변, 노동쟁의, 대상자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보안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안조사 기간 및 보안조사 연장 기간과 보안조사단 활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조사단장은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중지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안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안조사의 종료) ① 조사단장은 보안조사 기간 중이더라도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보안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출된 장비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종료 전이라도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할 수 있다.

1. 조사 사유

2. 보안조사단 구성 및 담당 업무

3. 보안조사단이 보전 또는 제출 요청한 자료의 목록 및 실제 보전 또는 제출된 자료의 목록

4. 조사대상 장비 및 인원

5. 조사 방법 등 조사 절차 개요

6. 조사 결과 및 근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보안조사권 남용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① 보안조사를 시행하는 조사단원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단원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의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 및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단원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나 보안조사의 결과 알게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하 “제공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④ 조사단원은 관련 정보의 제공등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단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는 보안조사의 시행 근거, 대상, 보안조사단의 구성, 조사 기간 및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조사’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고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안조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보안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조사를 수행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침해사고 조사에 대한 대책 등과 보안조사와의 실질적인 차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조사 사유가 제정안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조사 사유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보안조사 제도를 도입할 실질적 필요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셋째, 안 제27조 제3항은 피해이용자뿐 아니라 피해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전체 통지를 받은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보안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안조사 요청이 남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의 효율성과 남용 방지를 위해 요청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28조는 보안조사단의 인원, 구성, 활동기간 등 주요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인원 상한, 자격 요건, 활동기간의 기본 틀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하는 침해사고 조사단과 보안조사단의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있어 조사단 구성 및 기능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이용자 보호(제4장)

가. 손해배상 등(안 제35조부터 제38조)

(1) 제정안 요지

- 이용자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와 이용자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침해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 법원은 제37조제1항의 정보제공 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직권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안 제38조).

(2) 제정안 조문

제3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안조치와 이용자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침해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6조에 따른 보상지침을 준수한 경우 제3항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침해사고 보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보상에 관한 지침(이하 “보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침해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동통신보안지침의 준수에 관한 정보
2. 위험식별검사에 관한 정보
3. 이동통신보안계획에 관한 정보
4. 이 법에 따른 이동통신보안 의무와 이용자보호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정보
5. 침해사고의 발생원인·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당사자(자연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7조제1항의 정보제공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개 명령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된 사실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통상적인 노력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된 사실
 3.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정보가 공개되어도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게 된 사실

(3) 검토사항

-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명시하고,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의 추정, 보상지침 권고 등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35조 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전제¹²⁾되어야 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그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가 주로 대기업이고,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므로 일반 이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됨.
-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원칙이므로 침해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12)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한, 안 제38조 제6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유지명령은 당사자의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비밀유지명령의 직권 취소를 인정한 입법례는 없으며 대부분의 입법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절차를 통해 취소하도록 규정¹³⁾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38조의 비밀유지명령 취소 또한 법원의 직권취소를 배제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을 통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분쟁조정위원회(안 제39조부터 제41조)

(1) 제정안 요지

-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음(안 제40조)

(2) 제정안 조문

제3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이동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이동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①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침해사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집단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해킹수법이 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법적 절차에 앞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침해사고 관련 분쟁 중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¹⁴⁾하고 있고,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규정도 존재함.
-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분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¹⁵⁾에서 다루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

14)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5)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분쟁

사 제도 간의 조정 및 통합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제정안은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사유, 처리기간, 진술의 원용제한, 조정절차, 조정 거부 및 중지 등 핵심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분쟁조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주요 절차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사항만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단체소송(안 제42조부터 제48조)

(1) 제정안 요지

- 이 법은 이동통신보안 및 침해사고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2) 제정안 조문

제42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이용자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43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거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5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이용자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이동통신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45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7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단체가 아닌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48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는 침해사고 관련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체소송이란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단체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유사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현행법 체계상 일반적인 단체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개별 법률에 근

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¹⁶⁾되고 있음.

- 최근 SKT와 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구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통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한하여 단체소송을 허용¹⁷⁾하고 있어 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침해사고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통한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현재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음.

17)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7. 보칙(제5장)

가. 과징금 부과(안 제49조)

(1) 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49조).
-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제2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2) 제정안 조문

제49조(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행위 또는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9조는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위법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대신하여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다수 도입되고 있음.
- 안 제49조에 따른 과징금도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써의 과징금에 해당함.
- 다만, 안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지침은 권고사항이므로 사실상 사업자가 보안조치의 내용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제재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안 제7조 제1항 위반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